#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대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832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2.

발 의 자:문대림・윤종군・김한규

위성곤 • 황명선 • 박홍배

김영호 • 전현희 • 임호선

임미애 · 이병진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관광취약계층을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,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으로 정하고 있음.

그러나 동 규정은 경제적·신체적 제약 등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국민에게 관광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'관광기본권'을 실현하고 인간다 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점을 고려하였을 때, 지원 대상이 매 우 제한적인 상황임.

최근 저출산, 고령화, 경기침체 등 경제적·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육아, 간병 및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는바, 이러한 국민에 대한 관광참여 기회 확대 및 장애물 없는 관광활동 보장·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.

이에 지원 대상의 범위를 경제적 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

활동 지원이 필요한 다자녀 가구 및 청년 등으로 확대하여 관광 활동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'관광기본권'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47조의5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의5제1항 중 "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,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"을 "경제적·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 지원이 필요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, 저소득층, 다자녀 가구 및 청년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혀 행 개 정 아 제47조의5(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제47조의5(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 관리) ① -----체는 <u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</u> ----경제적·사회적 제약 등으 에 따른 수급권자, 그 밖에 소 로 인하여 관광 활동 지원이 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 필요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 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 법」에 따른 수급권자, 저소득 층에게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층, 다자녀 가구 및 청년-----수 있다. ② ~ ⑥ (생 략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